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5년 11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

1. 사회복지과-2508(2015.1.20)호 및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5676(2015.10.7)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11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복지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대상 : 강남장애인복지관외 4개소

나. 교부금액 : 금569,532,580원(금오억육천구백오십삼만이천오백팔십원)

다. 자원비율 : 시비90%, 구비10%

복지관명	2015년 예산액	기 교부액	11월 교부액			잔액
			계	시비	구비	
총계	7,913,460,000	6,763,496,050	569,532,580	512,579,310	56,953,270	580,431,370
강남장애인복지관	1,267,560,000	1,061,137,000	100,825,000	90,742,500	10,082,500	105,598,000
성모자애복지관	1,705,445,000	1,524,056,000	131,172,000	118,054,800	13,117,200	50,217,000
청음회관	1,549,445,000	1,283,873,650	105,761,440	95,185,290	10,576,150	159,809,910
충현복지관	1,796,075,000	1,566,952,000	122,919,000	110,627,100	12,291,900	106,204,000
하상장애인복지관	1,594,935,000	1,327,477,000	108,855,140	97,969,620	10,885,520	158,602,860

라.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

마. 교부방법 : 장애인복지관 교부신청에 의해 계좌 입금조치

※ 사통망(행복 e-음)을 연계하여 e-호조로 지급

바. 정산방법 : 매월 사업 종료후 매분기후 집행예산 정산

사. 교부조건 : 2015년 보조금은 반드시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편성하며 인건비 전용은 불가, 인건비 잔액발생 시 정산 후 반납.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집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붙임 1. 2015년 11월 보조금 교부 신청서 5부.

2. 2015년 11월 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 5부.
3. 2015년 11월 보조금 교부 청구서 5부.
4. 2015년 4/4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통보(서울시 공문).
5. 2015년 4/4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내역(법인.구립시설).
6. 지출결의서 1부(별첨

주무관 **임경훈** 장애인복지팀장 **한문석** 사회복지과장 **박선욱** 복지문화국장 **김효길**

부구청장 직무대전결 11/19
리 **주윤중**

협조자 주무관 **임경훈** 주무관 **강속희** 지출팀장 **김애영**

재무과장 **김병희** 행정국장 **이창훈**

시행 사회복지과-46911 () 접수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875 /전송 02-3423-8837 / lgh81@gangnam.go.kr / 부분공개